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출산·양육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, 기존에는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만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도록 하던 것을 자녀 구분 없이 휴직 기간 전체를 산입하도록 함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

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라목1) 및 2)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목 1) 및 2)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8항제3호 중 “둘째 자녀부터”를 “대상 자녀별로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과 관한 적용례) 제5조제2항제1호라목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한 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및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) ① (생략)	제5조(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휴직 기간, 직위해제 기간, 징계처분 기간 및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----- -----.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1조에 따른 휴직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	1. ----- ----- -----
가. ~ 다. (생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라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1조 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. <u>다만,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</u> <u>되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</u> <u>기간 전부로 한다.</u>	라. ----- ----- -----.
1) <u>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</u> <u>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</u> <u>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</u>	<u>서 삭제></u> <u><삭 제></u>

「공무원임용령」 제31조제2항제1호다목1)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)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2. (생략) ③ ~ ⑦ (생략) ⑧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소방공무원(이하 “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”이라 한다)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. 1. 2. (생략) 3. 해당 계급에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<u>둘째 자녀부터</u> 각각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 전부	<삭 제> 2. (현행과 같음) ③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대상 자녀별로</u> ----- -----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소방청 운영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5 - 7044